

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,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

-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

→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

나.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
(안 제2조)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

→ 제2조제1호 및 제2호

다. 유사·중복된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(안 제10조)

- 녹색성장위원회 → 환경정책위원회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,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,
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”를 “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이바지하여”를 “이바지함으로써”로, “향상시키는데”를 “향상시키는 데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최소화 하면서”를 “최소화하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제2조 제1호”를 “제2조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천 하여야”를 “실천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년도별 시행계획 수립)”을 “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녹색성장 추진계획”을 “추진계획”으로, “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”를 “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)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구미시 환경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른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
4.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 중 “구성 할”을 “구성할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강구 하여야”를 “강구하여야”로 한다.

제26조 중 “지원”을 “보조금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<u>이바지</u>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<u>향상</u>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6. “녹색경영”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<u>최소화</u>하면서 사회적,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. 7. ~ 9. (생략) 10. “신·재생에너지”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	<u>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이바지</u> <u>함으로써</u> ----- <u>향상</u> <u>시키는 데</u>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최소화하면서</u> ----- -----. 7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----- -----

·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
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
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
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
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
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
생에너지를 말한다.

제4조(시의 책무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
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
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
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
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지역주민
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
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
다.

④ (생략)

제6조(주민의 책무) ① 주민은 가
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
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, 쓰레
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
생활을 적극 실천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년도별 시행계획 수립) 시
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

----- 제2조
제1호 및 제2호-----
-----.

제4조(시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
한다)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주민의 책무) ① -----

----- 실천하여야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) ---
-- 추진계획-----

한 때에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의

구성 및 운영)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시 소속 실·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

2. 기후변화, 에너지·자원, 녹색기술·녹색산업,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

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

-----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---.

제10조(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)

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구미시 환경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른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
2.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3.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

4.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
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
에서 지명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
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
한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
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
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심의한다.

1.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
방향에 관한 사항

2.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
한 사항

3.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
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

4.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
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
항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
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

<삭 제>

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,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

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
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
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
어려운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위원

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
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
무를 검토·조정 또는 처리하기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
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녹색성장·산업 분과위원회 :
지방추진계획, 재정, 법제도
및 녹색기술, 녹색성장 관련
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
의 분야

2. 기후변화·에너지 분과위원
회 :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
및 에너지 기본계획, 온실가스
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, 배출
권거래제 등의 분야

3. 녹색생활·지속가능발전 분
과위원회 : 지속가능발전 기본
계획, 녹색생활 확산, 녹색국

<삭 제>

토, 녹색건물, 저탄소 교통체
계 구축, 물 관리 등의 분야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
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기 위
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
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, 국
제협상,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
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
다.

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
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
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
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
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 및
분과위원회는 제10조제9항에
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
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
할 수 있다.

1.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
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
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

<삭 제>

할 수 있다.

2.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.
2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.
3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.
4.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)
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
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
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
하고 전담조직을 구성 할 수 있
다.

제18조(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
감축목표 설정) 시는 에너지절
약 및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
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
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.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
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
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
다.

제2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으로 정한다.

제16조(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) -

----- 구성할 -----
-.

제18조(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
감축목표 설정) -----

----- 강구하여야 -----.

제26조(준용) -----
----- 보조금 지원 -----

-.

제27조(시행규칙) -----
- 필요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3. 생략

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.

15. 생략

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~ 라. 생략

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~ 마.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환경안전과
입 안 자	과 장	문 경 원
	담 당	신 경 순
	담 당 자	박 은 지 (480-5254)